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 SH공사

# 목 차

제1장 총 칙 -----	2
제2장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	9
제3장 기술자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자평가서 평가)세부기준 -----	50

# 제1장 총 칙

## I.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별표6에 따라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감리대가 산정

우리공사 「건설공사 책임감리감리대가 산정기준(업무편람 공관410)」에 의거 산정되는 감리대와 별도로 제경비·기술료·주재비 등 절감되는 예산을 현장감리원의 인건비로 활용하여 감리원을 추가로 증원 배치토록 하므로써 현장 안전관리 등 감독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경비, 기술료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은 현장감리원 인건비로 활용(모든 감리용역 공통)
- 주재비 절감액을 포함한 추가투입금액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통합감리하는 경우(단, 동일지구인 제외)
  -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공사로서 공사난이도가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인 경우(단,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총공사비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첨부1 : 현장감리원 추가 투입 산출 예시

## III. 적용기준

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서 평가, 기술자평가서 평가로 구분된다.
2. 유형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항목	적용기준
수행실적 평가서 평가	.아파트 감리용역인 경우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20억원 미만 .아파트 이외의 감리용역인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수행실적 평가 포함)	.아파트 감리용역인 경우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용역 .아파트 이외의 감리용역인 경우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의무적용대상공사(첨부2)로서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용역

## IV. 공동도급 구성원 수 제한 금지 등

1. 발주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공동도급의 지분율은 최소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격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공동도급 참여사를 3개업체 이상으로 허용하고 용역비가 30억원 미만일 경우 2개업체 이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 V. 제출서류

1. 감리용역 참여 시에는 수행실적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자평가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자는 기술자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VI. 기타사항

1. 발주부서에서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이미 의견 수렴을 거친 본 기준을 변경 없이 적용한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부서에서는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또는 사전 서면협의를 득해야 한다.
3. 세부평가기준(안) 작성 시 본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4.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5.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감리원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배점(50점) 범위 안에서 0.2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우리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평가자료의 누락·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의 기술자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야 함)
  
7.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실시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실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첨부 1]

## 현장감리원 추가투입 산출 예시

■ 000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적용기준)

- 총공사비 : 340억원
- 감리기간 : 82개월
- 난 이 도 : 단순공종 적용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주 재 비 : 미 적 용

1) 전면책임감리용역 기본대가 인원 및 현장감리원 추가 투입비 산출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현장감리 추가투입비
1. 직접인건비	총 감리원수: 감리사 기준 (총 공사비 340억원)	131.52	인월		681,914,365	
	상 주 (총 감리원 수 × 90%)	118.37	인월	5,184,872	613,733,299	
	기 술 지 원 (총 감리원 수 × 90%)	13.15	인월	5,184,872	68,181,067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1	식		750,105,801	34,095,718 (직접인건비의 5%)
3.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1	식		286,404,033	143,202,017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
4. 직 접 경 비					215,678,106	
* 주 재 비	(상주감리원 인건비의 30%)	1	식		0	184,119,990 (613,733,299 × 0.3)
출 장 비	(기술지원감리원 인건비의 10%)	1	식		6,818,106	
차 량 비		0	월	773,084	0	
현지사무원 급료		80	월	2,588,077	207,000,000	
도서인쇄비		1	식		1,860,000	
5. 손해배상보험료		1	식		32,700,000	
소 계					1,966,802,306	361,417,724
6. 부가가치세	10%				196,680,230	36,141,772
합 계	1 + 2 + 3 + 4 + 5 + 6				2,163,000,000	397,000,000

2) 추가투입 상주감리 인원 산출

- 추가 현장감리원 산출 : 397,000,000 ÷ 5,184,872(감리사 기준) ÷ 2.52(제경비·기술료) ÷ 1.1(부가가치세) = 27.65인·월
- 현장감리원 추가 투입비 : 34,095,718 + 143,202,017 + 184,119,990 + 36,141,772 = 397,000,000원

3) 전면책임감리용역 (개정 감리대가 : 기본대가 + 추가 투입인원)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기존	추가	개정				
1. 직접인건비	감리사 기준	131.52	27.65	159.17	인월		825,276,076	
	상 주	118.37	27.65	146.02	인월	5,184,872	757,095,009	
	기술 지원	13.15		13.15	인월	5,184,872	68,181,067	
2. 제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	1	1	식		907,803,683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 + 2) × 0.2	1	1	1	식		346,615,952	
4. 직접 경비							215,678,106	
주재비	(상주감리원 인건비의 30%)	1		1	식			
출장비	(기술지원감리원 인건비의 10%)	1		1	식		6,818,106	
차량비		0		0	월	773,084	0	
현지사무원 급료		80		80	월	2,588,077	207,000,000	
도서인쇄비		1		1	식		1,860,000	
5. 손해배상 보험료		1		1	식		32,700,000	
소 계							2,328,073,817	
6. 부가가치세							232,807,381	
합 계	1 + 2 + 3 + 4 + 5 + 6						<u>2,560,000,000</u>	

[첨부 2]

기술자평가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특수교량</li> <li>②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li> <li>③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시설</li> <li>④ 나들목(IC) 신설, 확장 이전,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li> <li>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지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li>⑥ 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li>⑦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ul>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li> <li>② 배수갑문</li> </ul>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광역상수도, 공업수도</li> <li>②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li> </ul>
항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문시설</li> <li>②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li> <li>③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계류시설</li> </ul>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철 도	①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철도교량)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 제2장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세부기준

### I. 입찰참가자격자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실적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II.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 1. 제출서류 명세

-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
  - (2) 감리업등록증(전기감리용역 공동발주시 첨부)
  -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회원수첩
  - (4)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다.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2. 서류 작성 방법

- 가. 페이지수 : 제한없음.
- 나. 인쇄 및 제본
  - (1) 용지크기 : A4 (210mm / 296mm)
  - (2) 재 질 : 백상지 (80g/m<sup>2</sup>), 양면인쇄
  - (3)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5) 제본순서
    - (가)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표지서식1)
    - (나)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 (나-1) 자기평가서(양식 2)
    - (다) 용역관련등록증 사본
    - (라) 공동수급협정서

- (마)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 3)
- (바) 참여감리원자격사항 (양식 4)
- (사) 감리원보유현황확인서
- (아) 상주책임감리원경력확인서
- (자) 상주보조감리원경력확인서
- (차) 기술지원감리원경력확인서
- (카) 참여감리원 경력·실적사항 (양식 5)
- (타)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양식 6)
- (파)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 (하)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양식 7)
- (거) 부실벌점 관련 사항 (양식 8)
- (너) 재정상태 건설도
- (더) 재무제표확인 또는 재정상태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 (러)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9)
- (머)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등록증서본
- (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서)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저) 참여기술자 교육실적
- (चे)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10)
- (커)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 교체빈도 (양식 11)
- (터) 공사비절감 기여감리원 (양식 14)
- (퍼)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 (허) 책임감리원 면접 평가표 (양식 15)
- (고) 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양식 16)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하여야한다.

라. 기타사항

- (1) 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

종이상 미비할 경우등)는 실격 처리한다

- (3)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그 이상의 동등하거나 등급(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상의 감리원 등급이 아닌 당초 배치된 감리원의 등급을 말함) 및 PQ시 평가점수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5) 수행실적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감리원 면접(발표)시 최저점수 부여한다.

### Ⅲ. 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 사항발생시 우리공사 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나. 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 시
  -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PQ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 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감리전문회사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영 제104조 제1항 별표7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7.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분야별 보조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감리원 수를 용역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감리원은 투입

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각호에 따른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가격입찰 결과 적격대상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당초 PQ평가점수(100점 초과점수 포함)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의 2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항목은 제외), 낮게 작성된 경우는 감점없이 자기평가 점수대로 평가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책임감리원 평가의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별도 표시)

12.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백분율의  $\pm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점) 평가는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수행실적평가서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점) 평가는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수행실적평가서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과 동일)

- 가. 공동도급의 지분율은 최소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격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은 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출자비율 명시, 양식3)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우리공사에서 동일시점(입찰공고일 기준)에 2건 이상을 발주할 때,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2건을 초과하여 PO에 응모할 경우에는 평가제외 및 실격처리 한다.
17. 참여업체에서는 용역 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를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책임감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책임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시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참여감리원의 공종별 등급 대비는 아래와 같다.

건축,토목,기계 등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전기통신, 소방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 및 초급감리원

20.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감리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현장감리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 기술지원감리원은 가능한 감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감리원 투입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의 자격 기준은 참여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자격기준(아래 모두 만족)
- 건설공사 안전관련 자격증(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을 보유한 자
  - 해당분야 경력(5년 이상)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22. 기술지원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5개 현장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배치를 허용토록 한다.

23.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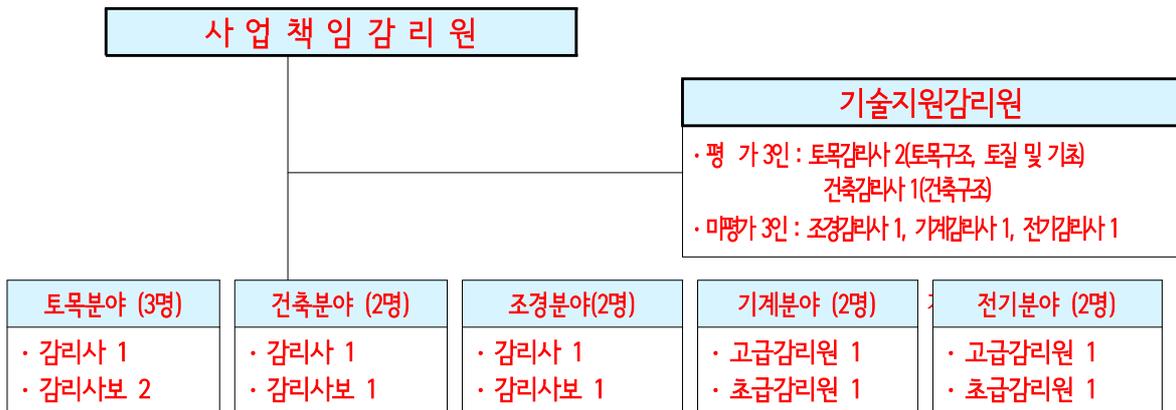
- 용업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감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4.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도 자격 및 성명 명시)

※ 작성예시



※ 미평가자의 성명 기재 관련 이행사항

- PQ서류 제출 시 미평가자도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사본허용)
- 미평가감리원은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을 만족(참여감리원 배점 만점)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력, 실적 등을 확인함
- 미평가감리원이 경력 및 실적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한(용역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등을 감안 발주부서에서 지정) 내 교체승인을 득해야 하며(교체건수에 포함), 교체에 불응할 경우 낙찰순위에서 제외됨
- 또한 미평가자의 성명 및 경력증명서 제출서류가 위조 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사유가 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할 수 있음.

#### Ⅳ.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감리원	(1) 책임감리원 (가) 해당 분야경력	50 (25)	○ 책임감리 대상공사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15 (10)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1,0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5 (10)	13.5 (9)	12 (8)	10.5 (7)	9 (6)	
	(나) 직무 분야실적	9	※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1)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수석감리사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감리사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다)교육 훈련	1	2)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수석감리사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감리사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미만	
		점수	3	2.8	2.6	2.4	2.2	
(라)면접 (발표)		5	○ 책임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건축, 기계, 토목, 조정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2점 -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3점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 책임감리원 면접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 기술자의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 활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2) 보조 감리원	[15]							
		9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경력 (단위: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30이상	30미만~26이상	26미만~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21이상	21미만~16이상	16미만~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15이상	15미만~10이상	10미만~5이상	5미만	
			점 수	9	8.1	7.2	6.3	5.4	
		(나) 직무 분야실적	5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수석감리사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감 리 사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감 리 사 보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2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수석감리사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2.0	1.8	1.6	1.4	1.2	
		감 리 사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2.0	1.8	1.6	1.4			
		감 리 사 보	2이상		2미만				
			2.0		1.8				
(다) 교육 훈련		1	○ 보조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건축, 기계, 토목, 조정분야에 한함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감리원	(3)기술지원감리원  (가)등급	[10]  3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수석감리사		감리사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감리사 이상		감리사보	
						3		2	
	(나) 해당 분야경력	6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7	5.4	5.1	4.8	
			(다)교육 훈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li> <li>※ 건축, 기계, 토목, 조정분야에 한함</li> <li>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평가함</li> <li>-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li> </ul> </li> <li>※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감리원 1인에 한하여 적용</li> </ul>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감리전문회사실적	[1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감리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 : 책임.시공.검측 감리실적×1.0+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0.7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10점)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만 70이상	70만 60이상	60만 50이상	50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만 55이상	55만 50이상	50만 45이상	45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만 45이상	45만 40이상	40만 35이상	35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만 35이상	35만 30이상	30만 25이상	25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만 25이상	25만 20이상	20만 15이상	15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만 15이상	15만 10이상	10만 5이상	5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만 8이상	8만 6이상	6만 4이상	4만
			점수	10	9.8	9.6	9.4	9.2
			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공동주택 등)인 경우(10점)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이상	30이상	30만 25이상	25만 20이상	20만 15이상	15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5이상	25만 20이상	20만 15이상	15만 10이상	10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20이상	20만 15이상	15만 10이상	10만 5이상	5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만 11이상	11만 7이상	7만 4이상	4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만 7이상	7만 4이상	4만 2이상	2만			
점수	10	9.5	9.0	8.5	8.0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입찰 참가제한, 업무정지	[15] 7	<p>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p>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5	<p>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2)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누계평균부실벌점</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1점이상 2점미만</th> <th>2점이상 5점미만</th> <th>5점이상 10점미만</th> <th>10점이상 15점미만</th> <th>15점이상 20점미만</th> <th>20점이상</th> </tr> <tr> <td>점수</td> <td>-0.2</td> <td>-0.5</td> <td>-1.0</td> <td>-2.0</td> <td>-3.0</td> <td>-5.0</td> </tr> </table>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3)재정 상태 건실도	3	<p>○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 감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p> <p><b>&lt;신용평가 등급 기준&gt;</b></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 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회사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개발 실적	[10] 3	<p>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결정을 받거나, 선 등록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li> </ul> <p>○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p> <p>○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10년미만</th> <th>10년이상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10] 3	(1) 개발·활용실적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p>※ 2014.1.1부터 실용신안에 대한 점수를 폐지하고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은 2014.1.1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p> <p>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p>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과 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 중첩도	(1)상주감리원	[5] 3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수	2		1			
	(2)기술지원감리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공사현장(기술지원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 또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li> <li>※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감리용역 공사기간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이 해당 감리용역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 또한 발주청이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li> <li>○ 기술지원감리원(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또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li> <li>-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b>5개 이상</b> 중복배치시 : 0점</li> </ul> </li> </ul>						
바. 교체빈도	(1)감리전문회사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li> <li>※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li> </ul>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 참여감리원	5	점수	5	4.5	4	3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체빈도율이 5% 미만인 경우 : 배점(5.0)-(최근1년간 교체건수/최근1년간 배치감리원수)×10</li> <li>○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의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li> </ul>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li> <li>○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감리원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공사로 인한 참여감리원의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 “건설공사 공사비절감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나.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다.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라.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li> <li>○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감리원 : 0.1점 × 가중치</li> <li>- 기술지원감리원 : 0.1점 × 가중치</li> </ul> </li> </ul> <p>&lt;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1.0</th> <th style="width: 25%;">0.8</th> <th style="width: 25%;">0.5</th> </tr> </thead> <tbody> <tr> <td>절감금액</td> <td>10억이상</td> <td>10억미만 ~ 5억이상</td> <td>5억미만 ~ 1억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li> <li>*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li> <li>*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li> <li>* 발주청 확인서류 첨부</li> <li>*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li> </ul>	구 분	1.0	0.8	0.5	절감금액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 1억이상
구 분	1.0	0.8	0.5							
절감금액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 1억이상							
감점	(1) 부패 행위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li> <li>○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li> </ul> </li> </ul> <p>&lt;부패행위&gt;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p>								

## V. 평가서 평가방법

### 1. 참여감리원의 평가방법

####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별표7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평가하며 동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기준 미달시 실격으로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각호에 따른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 (3)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책임감리원과 분야별 보조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감리원 수를 용역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감리원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기술지원감리원(평가 제외 감리원 포함)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 등)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5개이상 중복배치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기술자문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5) 참여감리원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과 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7) 참여감리원 중 전기감리원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 나.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해당분야) 유사한 공종(해당

분야 이외)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지관리”라 한다.),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감리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감리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4) 감리참여실적 경력산정 시 경력기간(일)을 30일로 나누어 개월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이 하는 절사한다.

※ 예) 경력이 790(총 경력을 합산한 일수)일인 경우 :  $790\text{일} \div 30\text{일} = 26.333 \approx 26\text{월}$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청의 감독실적은 100% 적용  
(발주청의 감독실적이란 발주청 근무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실적을 의미한다)

※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해당분야 및 해당분야 이외 구분 기준

- 해당분야 (100%)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책임감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이외 (60%) :

·건설기술관리법이외(주택법, 건축법 등)의 아파트 감리업무수행실적

·300세대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거복합건물의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 감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실적

·아파트의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

(상주감리원 평가시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 지원감리원 평가시 상주감리와 기술지원감리경력을 모두 인정)

(6)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7)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참여감리원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다. 직무분야의 경력평가

(1) 직무분야 경력이라 함은 참여감리원의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및 담당업무분야(소방 및 정보통신

등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하지 아니한 분야의 해당협회 양식에 명기된 담당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이하 "담당업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2) 인정받고자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학력과 자격 또는 경력 등으로 인정받은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직무분야의 경력에서 3년을 제외한다.

(가) 설계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설계업무로 기재된 경력중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발주청 등에서 설계한 경력을 인정.

(나) 시공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서 시공, 감독, 검사, 시험, 현장대리인업무 등으로 기재된 경력 중 건설회사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다) 감리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감리, 발주청의 감독, 검사, 시험업무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평가에 있어 상주감리원 평가시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감리원 평가시 상주감리와 기술지원감리경력을 모두 인정. (단, 감독경력은 100%인정)

라. 책임감리원 면접(5점)

업무수행능력 (2)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경험 - 공공성과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자질, 청렴도 등 (3)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배점=총점/인원수)	- 책임감리원의 자질과 능력 - 고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평가 - 동일감리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 점수산정방법 : 평가위원이 “상대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중·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삭제)** 산술평균함(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중치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은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적용
-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 책임감리원 면접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에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

※ 상대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마. 참여감리원 경력평가방법

- (1) 참여감리원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 (2) 주공종과 유사한 공사의 분야별 감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자문,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공, 설계,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예 : 00지구 아파트건설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 건축기술자 : 주공종이 아파트건설공사인 경우 수행기간
    - 토목기술자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부대토목(택지,대지,단지-조성공사 포함)의 공사 수행기간
    - 기계기술자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기계공사의 공사 수행기간
    - 전기기술자 : 주공종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전기공사의 공사 수행기간
    - 조경기술자 : 모든 조경공사의 수행기간
    - 소방기술자 : 모든 소방공사의 수행기간
    - 정보통신기술자 : 모든 정보통신공사의 수행기간
- (3) 준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됨.
- (4)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근무경력은 공사의 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되어야함.

- (5) 담당업무가 2개 이상 중복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예 :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 (6)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7)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 예 : 00공사, 00공사 외 7건 : 감리기간 : '92.1 ~ '93.12등은 평가제외
- (8) 타 현장 상주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현장 배치 예정일 이전에 해당 감리원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9)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가) 기술지원소방감리원(비상주 소방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 1)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감리현장은 5개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16층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감리원이 5개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음  
 (양식 16 기술지원소방감리원(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지원기계감리원(비상주 기계감리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지원전기감리원(비상주 전기감리원)이 기술지원소방감리원(비상주 소방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으로 동일현장에 중복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기계비상주감리현장, 전기비상주감리현장과 소방비상주감리현장(일반공사 감리대상)은 합산 중복개소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상주 소방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1인배치(소방기술사 1인 배치도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 감리원 대가 산정시에도 1인에 대해서만 산정한다.(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2) 타용역의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지 않은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바. 참여감리원 교육훈련 평가방법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에 한함)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책임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책임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0.3점)

소방, 전기분야 및 정보통신감리원은 아래와 같이 해당법령 교육으로 평가 함

- 1) 소방감리원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4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4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 2)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은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의7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1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1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 3) 정보통신감리원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특급,고급감리원) 및 40시간이상 60시간이하(중급,초급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5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 : 0점)
- ※ 정보통신감리원의 경우 2011.12.17일까지 “최근 3년간” 기간 적용없이 상기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점수 인정 함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10점

-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감리기간동안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다.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라. 용역수행실적은 책임감리실적, 시공감리실적, 검측감리 실적은 100%, 건축법상 감리.주택법 감리 실적은 70%를 인정함.

구분	100% 실적인정	70% 실적인정
정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대상공사 중 아파트에 대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수행실적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감리용역 참여실적 · 300세대 이상이 확인되는 주상복합건물 감리용역 참여실적

-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감리업무실적은 해당 감리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감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해당 발

주청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사.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 또는 발주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함.

아. 산정방법=(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실적 ×1.0 +(건축법상, 주택법상 감리)실적×0.7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비가 500억원일 때 2개 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감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text{억원} \times 0.6) + (100\text{억원} \times 0.4) = 160\text{억원} = 10\text{점}$  (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31까지 금액계상[2002. 5. 2부터 2004.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3. 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 [2003. 3.2부터 2005. 5.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 신용도 : 15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점)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벌점 (5점)

- (1)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등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다.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가. 개발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았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가)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2)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3)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4) 위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5) 위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6)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2014.1.1부터 실용신안에 대한 점수를 폐지하고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은 2014.1.1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가.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 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2)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
- (4)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 (5) 배 점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적용건수에 대한 금액 실적은 투자 실적에서 제외 (2012.01.01부터는 포함)

(6)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16조의2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5. 업무중첩도 : 5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평가자료의 누락·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의 기술자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야 함)

가. 상주 감리원 (3점)

-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용역수행중인 타용역과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감리원의 비중에 따라 평가
- (2) 배 점

구 분	책임 감리원	보조 감리원
점수	2	1

- (가) 다른 공사현장(기술지원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되었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나)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감리용역 공사기간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이 해당 감리용역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 또한 발주청이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원감리원 (2점)

-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용역수행중인 타용역과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감리원의 비중에 따라 평가
- (2) 배 점
  - (가)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었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나)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5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6. 교체빈도 : 10점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적용이외의 공종은 해당법률(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단체(법인 또는 협회)의 증명서 또는 법령에 정한 발주자(소방의 경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에서 교체빈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단, 소방감리(비상주 포함)의 경우는 관련 협회에서 교체빈도 업무 가능시점까지 교체빈도 평가 배제)
- 나. 발주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교체빈도 평가시에는 착오나 고의 누락 방지를 위해 협회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참여용역 실적과 발주자 확인 실적이 상이할 경우(누락된 용역)는 교체건수로 계산한다.  
(해당법률에서 정한 단체, 법인 또는 협회의 용역 참여실적 제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배치계획서 및 배치변경계획서 제출)  
“예시”  
협회(단체 또는 법인)에 등록된 용역 참여실적이 15건이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용역을 10건 제출한 경우 5건은 교체건수로 계산

다. 감리전문회사 (5점)

(1)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 중 현장배치된 감리원 수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사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2) 배 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5.0	4.5	4	3	0

~~※ 교체빈도율이 5% 미만일 경우 : 배점(5.0점) - (최근1년간 교체건수/최근1년간 배치감리원 수)×10.0~~

라. 참여 감리원 (5점)

- (1)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참여감리원은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비리관련 감점사항 추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표지서식 1]

접수번호	
------	--

##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용역명 : \_\_\_\_\_

업체명 : \_\_\_\_\_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_\_\_\_\_ )

[양식 1]

##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붙임 : 감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 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 여 감리원	책임감리원 (성명)	등 급						
		경력	해당분야	년	15(10)			
			직무 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6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3		
		교육훈련			1			
		책임감리원 면접			(5)			
	소 계			25				
	보조감리원 (성명)	경력	해당분야	월	9			
			직무 분야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 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3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경력	년	2		
		교육훈련			1			
		소 계		총점/평가보조 감리원수 =	15			
	기술지원감리원 (성명)	등 급			3			
		경력	해당분야	년	6			
			교육훈련			1		
소 계		총점/평가감리 원수 =	10					
2. 유 사 용역실적	감리용역실적 (최근 3년간)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실적)×1.0+ (건축법상감리, 주택법상감리)×0.7	억원	10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감리전문회사	월	7				
		참여감리원	월					
	부실벌점	(총점에서 감점)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3				
		특허 실용신안	건 건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7				
	소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014.1.1부 터 적용)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3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특허		건 억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7				
	소 계			1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5. 업 무 중첩도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2		
			보조감리원	1		
		기술지원감리원	2			
	소 계			5		
6.교체빈도	감리전문회사의 교체빈도	현장배치 감리원수 : 명 교체건수 : 건 교체빈도율 : %		5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건수)	교체건수 : 건		5		
	소 계			10		
합 계		배점(100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상주감리원 : 0.1점×가중치 기술지원감리원 : 0.1점×가중치 (상주,기술지원감리원 각 1인 적용)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피해금액 3%초과, 10억 초과 : -5점 - 피해금액 1%초과 3%이하, 3억초과 10억 이하 : -3점 - 피해금액 1%이하, 3억 이하 : -1점
	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점				점		

※ 수행실적평가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양식 3]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 참여 감리원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감리원									
○○○									
보 조 감리원	○○○								
	○○○								
	○○○								
	○○○								
기술지원 감리원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감리원 경력 확인서 1부.

○ **교육훈련**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감리원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참여감리원 경력·실적사항

□ 해당분야 경력현황(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감리원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감리원	성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양식 6]

##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구분		발주처	사업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책임 감리								
		소 계							
	유사 감리								
		소 계							
		계							
진 행	책임 감리								
		소 계							
	유사 감리								
		소 계							
		계							
합계									

- ※ 1. 유사용역 사업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 2.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 실적만 인정.
- 3. 감리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7]

##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				
계					

-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 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8]

##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측정기관	부실벌점	부실점수	비고
계				

첨부 :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부실벌점 확인서

[양식 9]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 참여업체 해당)

○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경과 기간	활용실적		점 수 (건당점수× 실적가중치)
					건수	금액 (천원)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실용 신안							
	소 계						
	소 계						
계							

- ※ 1. 해당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㉑	A	B	A/B ㉒	A	B	A/B ㉓		
가										(㉑+㉒+㉓)/3×참여지분율	
나										(㉑+㉒+㉓)/3×참여지분율	
계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감리원 ○○○			중복배치 또는 규 정위반 시 : 평가대 상에서 실격 처리	
상 주 보 조 감리원	○○○		상동	
	계		총 점 / 평 가 보 조 감리원수=	
기술지원 감리원	○○○		10개이상 : 0점 중복배치 또는 규 정위반 시 : 평가대 상에서 실격 처리	
	○○○		상동	
	○○○		상동	
	○○○		상동	
	계		총 점 / 평 가 보 조 감리원수=	
총 계				

### 감리전문회사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감리원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감리원	기술지원 감리원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 여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지원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

구 분	건 명	절감금액	가중치	점 수
회사명(성명)	○○○	00억	1.0~0.5	0.1점 × 가중치
회사명(성명)	○○○	00억	1.0~0.5	0.1점 × 가중치
합 계				0.00점

\* 첨 부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I. 감리용역 개요

1)용역명				2)발주기관	
1-1)공사현장 위치				(발 주 청)	
3)공사개요					
4)감리자 (대표사)	4-1)회 사 명			4-2)대 표 자	
	4-2)등록번호			4-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1 . . . ~ 201 . . .				
7)과업범위	(감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감리원 현황

※ 공사비 절감감리원에 해당되는 감리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 감리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 기여율(%)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보조							
3)기술지원							

## 책임감리원 면접 평가표

번호	구 분		평 가 현 황					총 점	배점 (총점/위원수)
			평가위원 “가”	평가위원 “나”	평가위원 “다”	....			
1	A업체 책임감리원	업무수행능력							
		자질, 청렴도							
2	B업체 책임감리원	업무수행능력							
		자질, 청렴도							
3	C업체 책임감리원	업무수행능력							
		자질, 청렴도							
4	D업체 책임감리원	업무수행능력							
		자질, 청렴도							
:	:	:							

- ※ 점수산정방법 : 평가위원이 “면접 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함(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중치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은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등급 적용
- ※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수 배분표의 최하 등급 적용**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적용
  -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양식 16]

## 비상주 소방감리원 배치현황

분야	성명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 당해용역 비상주 배치도 1개현장 포함됨.
- ※ 관할 소방서 발급서류 등 첨부.(예 : 연면적 확인서류 등)

## 제3장 기술자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자평가서 평가)세부기준

### I.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자평가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자평가서 평가를 제출케 하고 기술자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자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자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II. 기술자평가서 작성방법

#### 1. 제출서류 명세

- 가. 기술자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양식1)
- 나. 기술자평가서 12부(양식2)
- 다. CD 또는 DVD (책임감리원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 라. 청렴서약서 1부(양식4)
- 마.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 2. 제출방법

- 가. 인편을 통한 직접제출 원칙
- 나. 택배나 우편 등 제출을 인정할 경우 제출방법, 도착기한 등 공고

#### 4. 제출기한

- 가.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개별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
- 나.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5. 평가서 작성방법 및 분량

- 가. 기술자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 (1) 기술자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가) 표지
  -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 (다) 목차
  - (라) 본문
- (2) 문서편집
  -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 (다) 줄간격 : 160%
  - (라) 글씨색상 : 흑색
  -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 (4) 표지작성
  -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인쇄 및 제본
  - (가) 규격 및 재질
    - 1) 규격 : A4(210mm ×297mm)
    - 2) 재질 : 백상지 80g/m<sup>2</sup>, 양면인쇄
    -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6)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자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 나. 분량

- (1) 기술자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3쪽 이내로 제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 부치장 등은 사용을 금함)
- (2) 간지, 비교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 (4)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

## 6. 세부작성지침

### 가. 참여감리원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1) 기술자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감리원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감리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감리원이 검토한 후, 기술자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감리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공사 공종별 감리계획

-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 2) 과업단계별 감리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라).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등

- 1) 책임감리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인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 4) 책임감리원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III. 일반사항

1. 기술자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감리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3. 기술자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자평가서의 작성은 "Ⅳ.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 수립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Ⅳ.평가서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자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참여감리원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2) 공사 공종별 감리계획
-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4. 다음 각 사항발생시 우리공사 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평가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발생시

다. 기타 발주부서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자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예시)]

【업무 흐름】	【주요 내용】	【기간】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능력(수행실적+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 작성</li> <li>■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건설기술심의(사전협의)</li> <li>■ 입찰공고 및 평가기준 적정성 자문위원회 개최</li> </ul>	
입찰공고		4일
입찰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li> </ul>	8일
부실감리원 등록여부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심사담당관에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li> </ul>	3일
수행실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S 부실사항 확인)</li> <li>■ 기술자평가 적격자 선정</li> </ul>	6일
수행실적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통보</li> </ul>	1일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li> </ul>	
기술자평가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자평가서 접수</li> </ul>	14일
기술자평가서 사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지침 위반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 심사</li> </ul>	3일
기술자평가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li> </ul>	1일
기술자평가서 평가결과 확인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본위원회) 구성하여 확인</li> <li>■ 개별 통보 및 이의 신청</li> </ul>	1일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제안서 제출</li> </ul>	6일
낙찰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li> </ul>	5일 이내 (총52일)
계약 체결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 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와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 IV. 평가서 평가기준

### 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		- 참여감리원	45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신용도	15	
참여감리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 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이해도 - 공사 공종별 감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15	기술자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10) , 발표 및 면접(5) 평 가 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수행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10	
	발표 및 면접	-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 감리원)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5	

※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입찰 참여 시 “수행방법” 및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평가등급별 가중치의 최하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서울시 One-PMIS 자료 활용)

※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비고
표지		- 좌측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들 중에서 누락된 경우(이하 “필수사항 누락”) 부적격 (실격)
요약서		
목차		
1. 참여감리원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할 경우에 좌측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 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한 추가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점 등의 평가기준을 발주부서에서 수립
	1.2 공사공종별 감리계획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1.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5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6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지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발표 및 면접	1.00	0.90	0.80	0.70	0.60

## 3. 기본사항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감리원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감리원 평가점수(배점50) × 45/5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배점10)

× 10/10

다) 신용도 환산점수 :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점수(배점15) × 15/15

(2) 참여감리의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자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한후 총점을 평가위원수로 나눈값(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

- (3)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 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 담당관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감리원 발표 및 면접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발주부서는 기술자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 (5) 발주부서는 기술자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자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7) 발주부서는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실명으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V. 평가서 평가방법

1. 기술자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참여감리원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수행방법” 및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평가등급별 가중치의 최하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감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는 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감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3) 참여감리원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은 책임감리원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책임감리원 발표 및 면접 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감리원(부실감리원)인지를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조회 한 후 해당될 경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를 적용한다
- (5) 기술자평가서 평가시에 과도한 편집기법으로 작성되는 발표자료(파워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기술자평가서의 요약서(한글문서, 지침양식 준수)를 편집없이 그대로 발표자료(한글문서)로 사용하며, 평가위원은 기술자평가서의 요약서로 내용을 확인 한다.
- (6) 책임감리원 발표 및 면접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 (7)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된 설명자료나 기술자평가서 발표 등의 과정에서 익명성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성 원칙은 사전심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8) 기술자평가서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가) 기술자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나) 녹음된 설명자료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기술자평가서의 요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자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자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3.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 (1)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자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자평가서 평

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자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2)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 1) 작성자 표지(標識) 사용(익명성 위반)
-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 3) 칼라 사용 위반
- 4)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자평가서	- 기술자평가서 회사명 표기	실격처리	
	- 기술자평가서 필수사항 누락	실격처리	
	- 기술자평가서 쪽수초과	쪽당 0.5점 감점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사용,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감점	
	- 칼라사용	1점 감점	
	- 용지크기 미준수	쪽당 0.5점 감점	
	- 글자체(진하케 표기 포함) 및 글자크기 미준수	한 건이라도 위반시 건수에 관계없이 1점 감점	
책임기술자 발표	- 발표시간 초과	30초당 0.1점씩 감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b>3점</b>	당해 심의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적발일로 부터 1년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적발일로 부터 2년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익명성 위반 등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자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에서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가) 변경사항 게시 내용

변경항목	우리공사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주시 보완한 내용	보완사유

나) 보완사항 게시 방법

용역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설명서에 상기 변경사항 게시내용을 명기

(나) 발주부서는 기술자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자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 1) 기술자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제출도서에 기술자평가서 제출자를 특정하여 기록한다든가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 일체를 우리공

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자평가서(또는 기술자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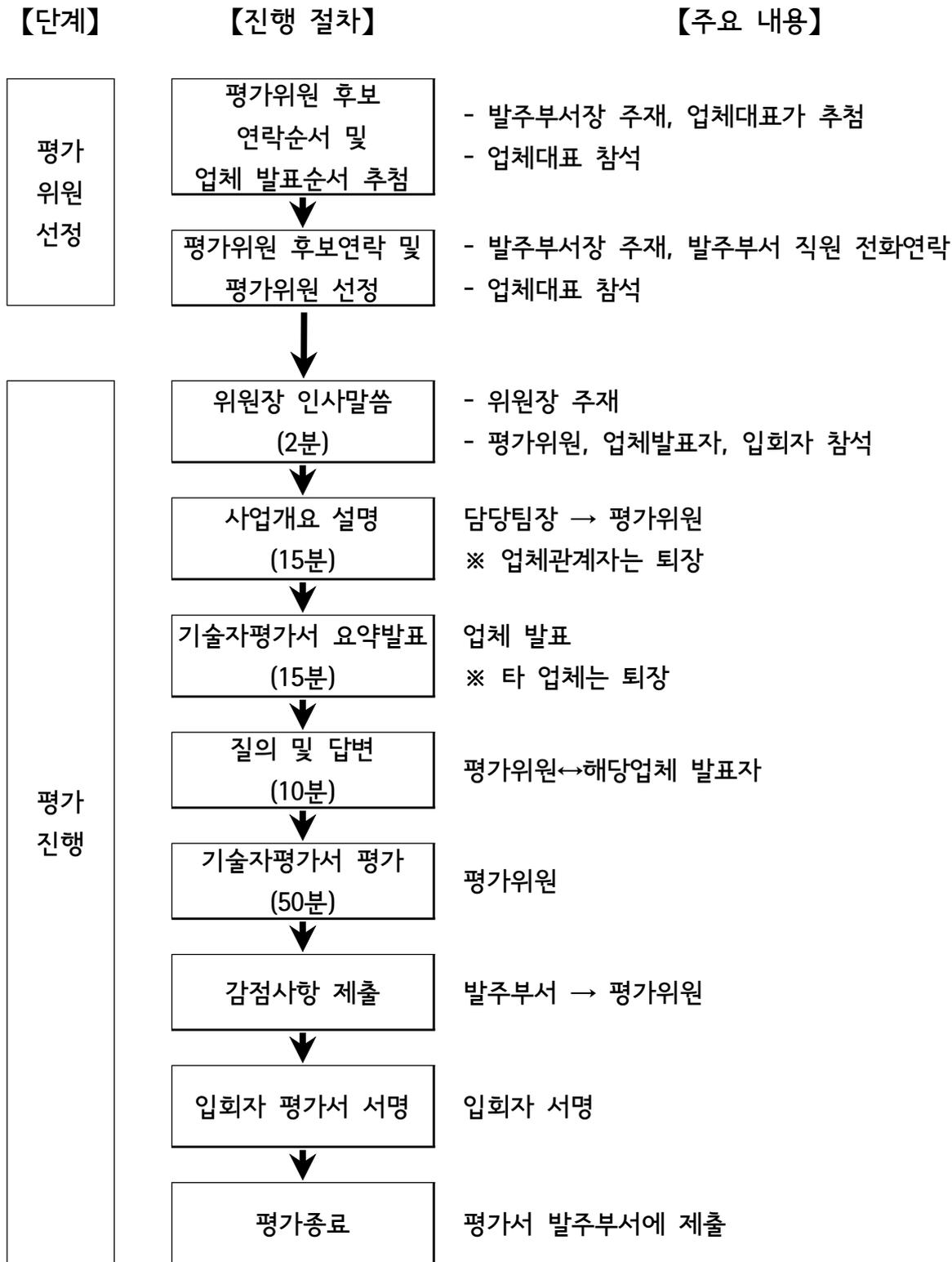
#### 4.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2012.12.24)에 따른다.

#### 5. 평가결과의 녹음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절차는 사진촬영 및 녹음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 신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자평가서 평가 진행절차 )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 입찰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양식 2)

<----- 210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감리용역 기술자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2  
9  
7  
m  
m  
↓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 1. 참여감리원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2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감리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책임감리원		
보조 감리원		
기술지원 감리원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공사공종별 감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																										
1)																										
2)																										
3)																										
4)																										
:																										
1)																										
2)																										
3)																										
4)																										
: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작업계획(월)의 숫자(서울한강체M, 10포인트, 양쪽정렬, 160%)

###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감리원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 1.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5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감리원 위주로 기술하며 보조감리원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6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